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45,000,668	7,350,020
일반회계	232,737,938	6,982,138
특별회계	12,262,730	367,882
기타특별회계	12,262,730	367,882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69,141	14,07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57,830	10,735
주차장특별회계	10,325,364	309,761
기반시설특별회계	1,110,395	33,31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061,29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,200백만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